

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

(박양숙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38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14일

발 의 자 : 박양숙, 강성언, 김경자(양천),
김광수(도봉), 김미경, 김용석(도봉),
김제리, 김진철, 김혜련, 김희걸,
박기열, 박호근, 우형찬, 유 용,
이병해, 이윤희, 이현찬, 장인홍,
한명희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(醫學)으로,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,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,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,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
- 나. 한의약기술의 과학화·정보화 촉진,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,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7조)
- 다.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, 시장의 권한 위임·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한의학 육성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의약 육성법」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한의약”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(韓醫學)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·개발한 한방의료행위(이하 “한방의료”라 한다) 및 한약의 생산·가공·제조·조제·수입·판매·감정·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(韓藥事)를 말한다.
2. “한의약기술”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(韓藥製劑,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) 및 한약재 재배(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)·제조·유통·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「한의약육성법시행령」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은 국가의 시책과

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한의약기술의 과학화·정보화 촉진 등)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·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
2.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
3.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
4. 한약시장의 지원·육성
5.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제6조(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

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계획 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)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,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학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

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